의료관광 대상 주요국가, 코로나-19에 대한 조치 현황

2020. 09. 11. (금) 기준

* 아래 조치 현황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 조치는 해당 출처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hina

*** 출처 :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및 각 지역 총영사관**

구 분	내 용	비 고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 85,153명 (사망 4,634)	사망률 : 5.4%
대응조치	**▶ 입국관련 조치(중국 내 공통사항)** ○ 기존의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 ○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함. ○ 도착비자 입국, 24/72/144시간 경유 비자 입국, 하이난 성을 통한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 무비자 입국 ASEAN 단체관광단의 광시 자치구를 통한 무비자 입국 등의 정책을 잠정 중단함. 단, 외교, 공무, 의전(礼遇)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의 입국은 동 공고문의 영향을 받지 않음. ○ 8.5.(수)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경우,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비자 신청 가능 ○ 7.27부터 상하이시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격리 조건 완화 ○ 후베이성 관련 모든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입국 제한 해제 ○ 9.9.부터 모든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탑승 전 3일(72시간) 내 지정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검사(PCR) 후 음성증명서 발급 및 제시 요망(9.8.까지는 5일 내 발급 음성증명서 제시) **▶ 입국관련 조치(홍콩)** ○ 홍콩 비거주자의 입국 금지(2020.3.25.~) ○ 중국,마카오, 대만에서 입경하는 경우 지난 14일 내 해외 어느 한곳이라도 간 경우 입국거부. ○ 소지비자 유효기간 14일 미만자 입국거부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경한자는 7월7일까지 14일 격리 실시 ○ 해외에서 홍콩 입국자는 9월18일까지 14일 격리 실시 ○ 6.1부터 홍콩 국제공항의 경유는 가능 **▶ 입국관련 조치(대만)** ○ 3.19.부터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 금지(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포함) ○ 대만공항 내 항공기 환승 금지(4.23~) ○ 대만 거류증, 외교공무증명서,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 3.21.(당일 포함) 이전에 무비자, 도착비자, 체류비자로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및 대만 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 대상 제4차 일률적으로 체류기간 30일(총 120일 연장)자동 연장.(6월15일기준) ○ 대만은 8월1일부터 외국인 의료목적의 입국을 허용 (건강검진, 의료미용 제외)	*** 출처 및 참고링크** 1.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및 각 지역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upload/cntnts/cn-zh/visa_new.pdf 2. 각 지역 정부망 http://www.gov.cn/ 3. Bendibao(本地宝) http://heb.bendibao.com/news/202049/54293.shtm 4. 대만위생복지질병관리본부 https://www.cdc.gov.tw/ 5. 대만외교부 영사국 https://www.boca.gov.tw/mp-1.html
기 타	○ **(중국)**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 **(중국) 중국 항공편 운항 코로나19 이전 대비 90%까지 회복** ○ **(중국)** 베이징행 국제선 직항노선 재개 ○ **(대만)** 7.16(목) 대만 타오위안국제공항에 코로나19 검사소 설치 ○ **(마카오)** 중국인외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계속 유지 ○ **(대만)** 9.1(화)부터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타액검사법으로 변경	9.9부터 모든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탑승 전 3일(72시간) 내 지정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검사(PCR) 후 음성증명서 발급 및 제시

Japan

* 출처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및 각 지역 대한민국 총영사관

구 분	내 용	비 고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 73,264명 (사망 1,412)	사망률 : 1.9%
대응조치	▶ **사증발급 관련** ○ 사증 제한 9.1부터 당분간 정비 ▶ **입국관련 조치** ○ 한국은 현재 일본 정부에 의해 감염증 위험 정보 레벨3(도항 중지 권고)에 해당, 14일내 한국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 입국 거부 대상 13개국 추가, 총 159개국 ○ 아시아 5개국에 입국제한 완화 - 대만,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5개 국가 입국 제규 9.8부터완화 ▶ **입국거부 예외** ○ 특별 영주권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정주자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러한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한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일본인의 자녀를 포함)이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 인도적 사유에 의한 재입국 허가(6.12) : 인도적으로 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인 사정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비즈니스 목적 입국 허가 ○ 9.1(화)부터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해제 - 일본 체류자격 보유자는 9.1. 이후 아래 절차에 따라 재입국 가능 - 8.31.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주한일본대사관에서 받은 「재입국관련 서류제출 확인서」와 72시간 이내 취득한「검사증명」을 소지 - 9.1.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출국 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받은 「수리서」와 체류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 취득한 「검사증명」 소지 - 수리서를 교부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입국 거부 ▶ **자가격리 조치** ○ 입국 전 스스로 자택 혹은 시설, 교통(자차, 렌트카 등) 확보 ○ 비용 모두 본인 부담 ○ 출국 전 : 특별 비자 신청, 활동계획서 제출, 14일간의 건강 모니터링, PCR 조사 결과 증명 ○ 입국 전 : 공항에서 PCR 검사, 건강상태 등 질문표 제출, 활동계획서 제출, 접촉확인 어플 도입 ○ 입국 후 : 대중교통 사용 금지, 14일간 격리, 건강상태 확인, 위치정보 저장 ○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이용 자제 요청, 한국 등 입국 금지 국가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 PCR 검사 실시	주한일본대사관 : https://www.mhlw.go.jp/content/000618379.pdf 위생노동성 : https://corona.go.jp/expert-meeting/pdf/sidai_r020618.pdf#search=%27%E6%B4%BB%E5%8B%95%E8%A8%88%E7%94%BB%E6%9B%B8+14%E6%97%A5%E9%96%93%E3%81%AE%E5%81%A5%E5%BA%B7%E3%83%A2%E3%83%8B%E3%82%BF%E3%83%AA%E3%83%B3%E3%82%B0%27
기 타	▶ **항공운항 관련** ○ (항공, 선박) 한국·중국발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7.22~당분간) ▶ **특이사항** ○ 한-일 무사증 제도 임시 중단 연장조치 (당초 6월까지에서 한 달 연장조치 : 3/7~당분간)	- ANA항공 : 9월말까지 비운항 - JAL항공 : 9월말까지 비운항 - 피치항공 : 10월24까지 비운항

▮ CIS(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출처 : 주알마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주러시아 대한민국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구 분	내 용	비 고
코로나-19 현황	● 러 시 아) 확진자 : 1,037,526명 (사망 18,080) ● 카자흐스탄) 확진자 : 106,584명 (사망 1,634) ● 우즈베키스탄) 확진자 : 44,930명 (사망 366)	사망률 1.7% 사망률 1.5% 사망률 0.8%
대응조치	▶ 러시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 7.15.부터 러시아 입국 외국인 대상 도착 3일전 받은 코로나 19 진단 검사(PCR 테스트) 음성확인서나 항체 생성 확인서 제출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면제(7.14) ※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도착 3일 이내 코로나 진단 검사 시행, 양성일 경우 지정시설에서 추가 검사 결과 음성 및 회복 시까지 격리(운송 항공사에 따라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비행기 탑승 불허 가능) ※ 고용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 카자흐스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 6.20 이후 한-카 정기항공편 이용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면제 ○ 영주권 소지자 등에 대한 제한적 입국 허용은 유지 ○ 6.15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은 6.20 이후 국제선 정기항공편 운항 재개와 관련, 한국 등 5개국 출발 정기항공편 이용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함. ○ 1번 그룹 국가(한국, 중국, 일본, 조지아, 태국) 출발 정기항공편 이용 입국자 대상 ▶ 우즈베키스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 6.15부터 일부 대상자에 대한 국제선 항공을 통한 입국 허용 △외교관 및 가족, △기진출 외국인 기업/기관 소속 전문가, △치료목적, △직계가족 방문, △우즈베키스탄 환승 국제여객(외교적 요청이 있는 경우), △우즈베키스탄 내 장기체류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 9.3-15간 한국발 입국자 대상 PCR 음성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 영어 또는 노 어본 및 격리동의서(거주등록 주소지, 격리시설 지정호텔 등 2주간 격리) 의무 제출 ※ 9.15 이후 한국 등 방역등급 재조정 예정 ▶ 사증발급 관련 ○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6.29(월) 일반여권 소지 우리 국민의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 - 7.28부터 비자신청 업무 재개 (결혼이민(F6), **의료관광(C-3-3))** (단, 중증 외국인환자로 의료진 판단에 따른 진료 연속성,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위해서 유효한 사증을 소지해야 하며, 단기 방문해야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을 통해 개별 허가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 출처 및 참고링크 1. 주알마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kz-almaty-ko/brd/m_8315/view.do?seq=133757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2.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uz-ko/brd/m_8555/view.do?seq=134689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기 타	▶ 항공 운항 관련 등 (러시아) - 대한항공 : 8.1~8.31 비운항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8.1~10.24 비운항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 항공 운항 관련 등 (카자흐스탄) - 에어 아스타나 항공 : 7월1일부터 월요일 금요일 - 아시아나 항공 : ~9월30일 주 1회(화) 운항 *9월8일22일 비운항 ▶ 항공 운항 관련 등 (우즈베키스탄) - 아시아나 항공 : ~ 9월30일 주 1회(월) 운항 - 대 한 항 공 : 9월 1일 ~ 9월 30일 비운항 ▶ 특이사항 ○ (카자흐스탄) 8.31부터 추가적 검역 완화 ○ (카자흐스탄) 한국 등 정기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 국가로의 자국민 출국 허용 (6.22) ○ (카자흐스탄) 제3국 출발, 카자흐스탄 도착 항공편 탑승 제한) ○ (우즈베키스탄) 8.15부터 검역 완화	

Vietnam

* 출처 : 주베트남대한민국 대사관 및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구 분	내 용	비 고
코로나-19 현황	● 확진환자 : 1,056명 (사망 35명)	사망률 3.3%
대응조치	▶ **사증발급 관련** ○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기준) ▶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 중단(3.17.기준) ○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 **입국거부 예외** ○ 외교, 공무 목적 방문 ○ 주요 대외행사 참석의 경우(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 ○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 ※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	-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기 타	▶ **항공운항 관련** ○ 6/16~9/16 국제선 여객 항공편을 통한 베트남 입국 금지 ○ 8/5 이후 항공 티켓 기준 "외국인 투자자, 전문가, 고급 기술인력, 기업 관리자" 베트남 입국 후 검사 결과 양성 시 국제의료보험에 가입 또는 초청기관이 치료비용 부담 ▶ **특이사항** ○ 한국에 대한 특별여행 주의보 발령 중 (~8/19 : 1개월마다 연장 여부 검토 중)	-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Thailand

* 출처 : 주태국대한민국 대사관

구 분	내 용	비 고
코로나-19 현황	● 확진환자 : 3,454명 (사망 58) ● 5월16일부터 한국 및 중국(마카오,홍콩 포함)을 코로나19 위험 감염지역 목록에서 제외함 ※ 코로나-19, 비상 사태령 9.30까지 재연장	사망률 : 1.7%
대응조치	▶ **사증발급 관련** ○ 한-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2020.4.13.부터) * 외교·공무여권 소지자 제외 ▶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 7.1.부터 제한적 입국 허용 ○ 입국 전 : 출국 14일 이전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 주재 발행 입국허가증 (COE), 비행적합 건강증명서, 입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RCR 방식), 10만불 이상의 치료비 (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가입증명서, 정부지정격리장소 예약 서류, 출발 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 입국 후 : 입국 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필수작성서류 제출 모니터링 시스템/어플리케이션 설치, 정부지정장소에서 최소 14일간 격리 및 관련 규정 준수, RT-PCR 방식의 코로나 검사	외교부 : http://www.0404.go.kr/dev/notice_view.mofa?id=ATC000000007949&pagenum=1&st=title&stext=
기 타	▶ **항공운항 관련** ○ 2020.8.3(월) 기준 진에어 운항 중단 방콕 -> 인천간 직항편 - 대한항공 (KE652) : 주 7회(매일) - 아시아나항공(OZ742) : 주 3회(화, 수, 금)	